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김진표·안규백·전해철

진선미 · 신정훈 · 문정복

박광온 · 전용기 · 이장섭

이상민 · 김종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복무기 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자에 대한 벌 칙규정이 미비함.

이에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근무지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을 한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 제33조제2항 및 제89조의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범 죄경력 등의 정보를 복무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3.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 5.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및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경우

제89조의3제1호 중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를 "제3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3조제2항제5호"를 "제33조제2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3조제2항제3호·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

고처분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①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
	원 복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범죄경력 등의 정보
	를 복무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	②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3.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
	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다
	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
	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

위를 한 경우

4. (생 략)<신 설>

5. (생략)

-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 저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 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 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2. 제33조제2항제5호, 제33조의
 10제2항제5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
 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
 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4. (현행과 같음)
5.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u>한 경우</u>
<u>6. (현행 제5호와 같음)</u>
1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
무의무 위반)
1. 제33조제2항제1호·제2호·
제4호·제5호,
2. 제33조제2항제6호,

없	이	일과	개시.	시간	후에	줄
근	하	거나,	허가	없이	무단	<u> </u>
로	조	퇴하.	거나 급	그무장	소를	\circ
탈	한	사유	로 통특	틀어 8	회	기상
경	고	처분을	- 받은	경우		
<신	,	철>				

<u>3</u> .	, 저]33:	조제]2항	-제	3호	• 7	<u> </u>	호의2	
	및	제;	3호	의3억	케	해딩	}하	는	사유	
	로	경.	コネ	분	슬	받은	2 7	성우	-	